

● 제289회 ●
서울특별시의회(임시회)
제2차 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2019. 9. 3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수 석 전 문 위 원

【서울특별시장 제출】

의안번호 906

I. 조례안 개요

1. 제안경위

- 가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- 나. 제출일자 : 2019년 8월 7일
- 다. 회부일자 : 2019년 8월 13일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특별시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먹거리보장을 실현하는 등 먹거리정책의 지속적 추진·확대 및 발전을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먹거리시민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고 있음.
- 나. 먹거리시민위원회 존속기한은 2019년 9월 21일까지이나, 먹거리 마스터플랜 2030 수립 추진과 변화하는 먹거리 문제에 대한 대응력 강화 등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확립을 위해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2

년 9월 21일까지 연장하는 조문 신설(안 제35조)

나. 위원회의 존속기한 삭제(조례 제6667호 부칙 제2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0조의3

나. 예산조치: 협의완료

다. 기 타

(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
(2) 입법예고 (2019. 7. 4. ~ 7. 24.) 결과: 의견없음

(3)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: 별도 첨부

II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문성)

1 개정안의 제출 사유

- 서울특별시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먹거리보장을 실현하는 등 먹거리정책의 지속적 추진·확대 및 발전을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먹거리시민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고 있으나,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2019년 9월 21일로 일몰되어 먹거리마스터플랜 2030 수립 추진과 변화하는 먹거리 문제에 대한 대응력 강화 등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안된 안임.

2 개정안의 내용 검토

- 개정안은 제35조를 신설하여 위원회의 존속기간을 2022년 9월 21일까지로 연장하는 안으로 먹거리 시민위원회는 「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」 제21조에서 제34조에 걸친 내용으로 운영되고 있음.

현 행	개 정 안
〈신 설〉	<u>제35조(위원회의 존속기한)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2년 9월 21일까지로 한다.</u>
<u>제35조 (생 략)</u> 부 칙 〈 제6667호, 2017.9.21. 〉	<u>제36조 (현행 제35조와 같음)</u> 부 칙 〈 제6667호, 2017.9.21. 〉
<u>제2조(위원회의 존속기한) 제21조</u> <u>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.</u>	<u>〈삭 제〉</u>

- 「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1조¹⁾는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최대 5년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위원회를 설치할 때 계속 존속하여야 하는 명확한 사유가 없는 경우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음.
 - 이에 사업목적이 달성되었거나 하는 경우 위원회는 존속기한에 의하여 폐지되어야 함.
- 또한 같은 조례에 따라 먹거리시민위원회의 경우 「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」에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부칙으로 정하고 있었던 상황임.
- 먹거리 시민위원회는 먹거리마스터플랜 2020에서 제안된 각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고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조직된 위원회로 판단할 수 있으나 각 분과위원회 회의록을 참고하여 볼 때, 2018년부터 먹거리마스터플랜 2030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던 것으로 파악됨.
 - 공공급식분과위원회 2018년 9월 12일
[공공급식 개선계획 보고 및 2030 수립방향 논의]
 - 식품안전분과위원회 2018년 7월 17일
[2030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자문·심의 과제 자료공유 및 논의]

1) 「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위원회"란 위원회, 심의회,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와 시 산하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, 협의,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.

제11조(위원회의 존속기한)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또는 규칙에 명시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.

- 도농상생분과위원회 2018년 7월 18일

[분과별 먹거리마스터플랜 2030수립을 위한 제안사항 논의] 등 이외의 다수의 회의에서 먹거리마스터플랜 2030수립을 위한 논의가 있어 왔음.

3 개정대상 사무의 추진실적

- 먹거리시민위원회는 10개 분과 각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최대 150명이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음. 이와 관련하여 분과위원회 별 회의개최실적과 위원회별 위원 참석율을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.

- 2017년 이후 실적의 종합임.

연번	분과위원회 명	회의개최실적	참석율 ²⁾
1	공공급식분과위원회	10	56.0%
2	도시농업분과위원회	7	73.3%
3	식품안전분과위원회	7	57.5%
4	도농상생분과위원회	16	62.6%
5	지속가능식생활분과(영양과건강)	11	53.5%
6	먹거리사회적경제분과(먹거리산업)	13	45.6%
7	먹거리자치분과위원회	18	61.7%
8	먹거리문화교육홍보위원회	15	62.7%
9	먹거리생태분과위원회	14	64.6%
10	먹거리복지분과위원회	12	53.3%
	전체평균	12.3(회)	59.1%

- 먹거리자치분과위원회가 18회로 가장 많은 회의개최실적을 보이

2) 위원이 중도사퇴하는 경우 위원회 구성원이 줄어든 것을 반영한 실질 참석율임. 예를 들어 15명 정원에 10명이 참석하는 경우 66.6%가 되나 위원이 중도에 사퇴하여 12명이 정원이 되는 경우 83.3%로 계산됨.

고 있으며 도시농업분과위원회와 식품안전분과위원회의 경우 회의 개최실적이 각 7회로 가장 낮게 나타남.

- 참석율을 기준으로 본다면 먹거리사회적경제분과가 13회 회의를 개최했으나 참석율은 45.6%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, 도시농업분과위원회가 7회 회의를 하였으나 73.3%로 참석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.
- 참석율이 가장 높은 도시농업분과위원회의 경우 분기별 1회 정도의 회의실적을 가지고 있으며, 참석율이 가장 낮은 먹거리사회적경제분과의 경우 분기당 약 2회 정도의 회의를 개최하는 등 회의개최의 숫자와 참석율 사이의 반비례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.

도시농업분과위원회 회의개최실적

연번	회의날짜	주요내용	참석인원 (참석/ 현원)
1	2017.12.5	총무및기획위원회위원선출 분과별정보공유및소통창구운영동의,정례회의일정논의등	10/15
2	2018.3.20	·'18.육성 및 지원계획 자문 ·박람회 준비상황 보고 ·조례 시행규칙안 심의 ·도시농업3.0 플랜 방향논의	12/15
3	2018.6.15	·박람회 소위원회 활동 및 논의사항 보고 ·활성화 소위원회 활동 논의사항 보고 ·먹거리마스터플랜 관련 도시농업분야 중간진단 논의 ·기타 정보공유 및 공람	10/15
4	2018.10.19	·박람회 소위원회 활동보고 및 논의 ·활성화 소위원회 활동보고 및 논의 ·2019년 주요 사업예산안 보고	7/15
5	2018.10.26.	·제4기 위원 위촉, 위원장 ·부위원장 선출 ·소위원회 구성 및 소위원회장 선출 등	13/15
6	2019.1.15	·박람회 소위원회 활동보고 및 논의 ·활성화 소위원회 활동보고 및 논의 ·19년 주요사업예산안 보고	15/15
7	2019.7.10	·현안사항보고 ·2020년 주요사업 보고	10/15

먹거리사회적경제분과(먹거리산업)위원회

연번	회의날짜	주요내용	참석인원 (참석/ 현원)
1	2017.11.28	·분과위원장 및 총무, 기획위원회 위원 선출	8/13
2	2018.1.11	·분과 역할, 활동계획, 운영방안 논의	6/13
3	2018.3.23	·2018년 먹거리사회적경제분과 자문·심의 사업 선정 관련 논의	7/13
4	2018.4.18	·2018년 먹거리사회적경제분과 자문·심의 사업 선정 관련 논의	5/13
5	2018.5.18	·먹거리시민위원회 발굴사업 관련 논의 등	5/13
6	2018.6.19	·사회적경제분과 자문심의 과제에 대한 자료공유	6/13
7	2018.7.16	·분과별먹거리마스터플랜 2030 수립을 위한 제안사항 논의 등	5/13
8	2018.8.23	·먹거리마스터플랜 2030수립을 위한 제안사항 논의	3/13
9	2018.10.25	·2030 먹거리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향후 방향 논의	5/13
10	2018.11.27	·2030 먹거리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향후 분과역할 정리	7/13
11	2019.4.11	·2030먹거리마스터플랜수립을위한분과역할및방향논의 ·먹거리사회적경제분과집중회의안건관련논의	7/14
12	2019.5.15	·2030 먹거리마스터플랜정책제안관련논의	8/14
13	2019.6.12	「2020 지속가능한 먹거리실천 공모사업」관련논의 ·「2019년 지구밥상실천단 실천지침」관련논의	6/13

- 개정안의 심의에 있어 회의실적과 참석율의 제고가 필요한 상황으로 여겨지며 전체 참석율이 60%에도 이르지 못하는 점 등은 시민위원회의 존속과 관련하여 논의의 필요성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.
- 특히 동 사무가 150명이 참여하는 큰 규모의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평균참석은 60%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위원회의 존속기간 외에도 위원회의 규모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4 종합의견

- 「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1조 등에 의하여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최대 5년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2년간 운영해 온 위원회를 3년 연장하는 안에 대하여 입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먹거리시민위원회의 존속과 관련하여 사무의 추진실적이 사무존속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심도있는 개정안의 심의가 요구된다 할 것임.